# 판결의 승인과 집행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 싱가포르에서의 스위스 판결

싱가포르에는 외국 판결에 관한 두 가지 법정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판결 상호집행법(Reciprocal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t 1959)은 2019년 개정으로 비금전 판결과 중간명령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국가의 판결에 적용됩니다. 스위스는 고시되지 않았습니다.[1] 따라서 스위스 판결은 보통법상 판결에 기한 소송으로 집행됩니다. 판결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스위스 법원은 국제적 의미의 관할권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스위스에 현존했거나 스위스 법원의 관할에 복종했음을 뜻합니다. 사기, 자연적 정의 위반, 공서에 관한 항변이 없어야 합니다.[2] 보통법상으로는 일정 금액의 금전 판결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토큰 이전을 명하는 스위스의 명령은 보통법상 싱가포르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법원은 같은 구제를 구하는 새로운 싱가포르 소송에서 스위스 법원의 사실 인정이 쟁점 금반언(issue estoppel)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스위스에서의 싱가포르 판결

싱가포르 판결은 스위스 국제사법(PILA)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스위스에서 승인되고 집행됩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스위스 저촉규칙에 따른 관할권을 가졌어야 합니다. 계약상 청구의 경우 이는 피고의 주소지, 유효한 관할합의 또는 이행지를 뜻합니다. 불법행위 청구의 경우 행위지나 결과발생지를 뜻합니다. 판결은 확정적이어야 하며, 스위스의 공서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내려진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3] 스위스에서는 비금전 판결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에 대한 의제신탁을 선언하거나 토큰의 이전을 명하는 싱가포르의 명령은 원칙적으로 스위스에 있는 피고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명령은 사정이 다릅니다. 스위스 법원은 전 세계적 자산동결명령(worldwide freezing injunction)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71조에 따른 스위스 가압류가 잠정적 보전을 위한 스위스의 배타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4] 마레바 금지명령(Mareva injunction)을 받은 싱가포르 원고가 스위스의 자산을 보전해야 한다면 스위스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에 관한 싱가포르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승인된 가압류 사유가 됩니다.

| 집행 방향 | 제도 | 금전 판결 | 비금전 판결 | 중간명령 |
|---|---|---|---|---|
| 싱가포르에서의 스위스 판결 | 보통법상 판결에 기한 소송 | 가능. 확정적이고 스위스 법원이 국제적 관할권을 가진 경우 | 보통법상 불가(쟁점 금반언 가능) | 불가 |
| 스위스에서의 싱가포르 판결 | PILA 제25조–제27조 | 가능. 싱가포르 법원이 제26조에 따른 간접관할권을 가진 경우 | 가능 | 불가. 스위스 가압류 필요 |
| 양방향, 중재판정 | 1958년 뉴욕협약 | 가능 | 가능 | 긴급중재인 명령은 싱가포르에서 IAA에 따라 집행 가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집행 방향 | 제도 | 금전 판결 | 비금전 판결 | 중간명령 |
|---|---|---|---|---|
| | | | | 능. 스위스에서는 계약상 효력만 있음 |

## 주

1. Reciprocal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t 1959. Reciprocal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mendment) Act 2019에 의해 2019년 10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됨. Reciprocal Enforcement of Commonwealth Judgments Act 1921은 2023년 3월 1일부로 폐지됨. ↩
2. 보통법상 요건은 *Hong Pian Tee v Les Placements Germain Gauthier Inc* [2002] SGCA 18, [12]–[14]에 제시되어 있음. ↩
3. PILA (SR 291) 제25조–제27조. 간접관할의 근거는 제26조에, 공서 및 적법절차 항변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음. ↩
4.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영국식 자산동결명령을 PILA 제25조의 결정으로 승인하는 것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음. 제H편 제V장은 그 대체 수단으로 스위스 가압류를 설명함. ↩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